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14 선고 2021가단104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접수 제730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4가소302582 판결에 기하여 D 유한회사에게 “40,306,169원 및 그 중 10,693,558원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C과 피고 간 증여계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E(2016. 12. 25. 사망)의 자녀들인 C, 피고, B, F가 각 1/4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있었는데, C과 피고 사이에 2019. 11. 8.자로 C이 보유한 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접수 제73051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는 C에게 대금 5백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C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도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9. 9. 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G 주식회사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가소5017624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대위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피고 스스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백만 원가량을 C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채권자 중에는 위 G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2개월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비롯하여, C과 피고의 친족관계를 감안하면,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우

별 지 목 록

[토지]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106㎡

[건물]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목조 스톤지붕 단층 주택

1층 26.45㎡

(- 이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 현 소유자 (공유자 지분 3/4 지분))

